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속자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시신 처리비용 청구 등 》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729호)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060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경윤

목 차

I . 개요	1
--------------	---

II . 검토 의견	3
------------------	---

1. 희생·공헌자의 유골에 대한 공성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문대림의원안)	3
--	---

2.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 비용 청구(장종태의원안)	7
--	---

※ 참고 자료

1.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현황	13
-----------------------------	----

I. 개요

1.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72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6. 11.
- (3) 회 부 일 : 2025. 6.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유골 화장 시에도 사용료가 면제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관련 논란을 해소하고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2.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106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5. 6. 25.
- (3) 회 부 일 : 2025. 6. 26.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 시장등이 장례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자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는 거부하고 재산 상속만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여야 하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상황임.

이에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 3 신설).

II. 검토 의견

1. 희생·공헌자의 유골에 대한 공성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문대림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 ----- ----- ----- ----- ----- . 이 경우 제2호에 대하여는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용료 및 부과방법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희생·공헌자가 사망하는 경우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관련 법규·지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025년 장사업무 안내」(지침)	
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3호, 2012. 2. 1., 일부개정] ◦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별 관내·관외 화장비용의 격차가 커서 관외 기초 생활수급자 등이 화장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¹⁾	
법 률 명	대상 구분
독립유공자 예우법	순국선열,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예우법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 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 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보훈대상자 지원법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에우법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법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법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제대군인지원법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제 대상을 “시신”으로 한정하고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참고자료1).

< 공설화장시설의 시신·유골 화장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구, %)

시 신	유 골	시 신	
		보훈대상자	보훈대상자
340,983	57,552	18,640 (5.5%)	2,127 (3.7%)

* 장사시스템은 공헌·희생자를 구분한 보훈대상자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자료: 보건복지부

-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사망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 그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충실히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와 관련하여, 법제처에서도 시신의 화장만을 면제대상으로 한다면 규정의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며, 면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을 제시한 바도 있음.

< 법제처 법령해석 20-0516 (2020.11.19.) >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대상 범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회답: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법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여야 함
- 이유
 - 장사법 제2조제2호 및 제8호와 제23조의2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신의 화장만을 면제 대상으로 한다면 위 규정의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며, 면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또한,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장사법 제23조의2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보훈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으로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에 유골의 화장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장사업무안내 지침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2.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 처리 비용 청구(장종태의원안)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자가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2조의3(상속자에 대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 청구) ① 시장등이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경우 시장등은 그 처리 비용(제12조제6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 및 제12조의2에 따라 유류금품을 처분하여 충당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 받은 사람은 취득한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시장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시신 등의 처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주요 검토사항

- 현행법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하여는 시장등이 장례의식을 행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있는 경우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연고 시신에 대한 장례 관련 법률·지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2025년 장사업무 안내」(지침)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중 발췌	
■ 적용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외국인 사망자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국내·외국인 사망자	

- 한편,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 지원 현황을 보면, 2023년 5,543건, 2024년 6,139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연고를 찾더라도 연고자가 장례 절차를 거부하는 사례 또한 2023년 4,151건, 2024년 4,68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경우에도 시장등이 시신을 처리하고 있지만 그 비용을 상속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소송 제기 외에는 없는 실정임.

<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장례 지원 현황 >

(기준: 2024. 12. 31. / 단위: 건)

구 분	연고자 없음	연고자 알 수 없음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기피	합 계
2020	625	294	2,217	3,136
2021	700	352	2,551	3,603
2022	950	396	3,496	4,842
2023	1,049	343	4,151	5,543
2024	1,071	386	4,682	6,139

* 자료: 보건복지부

□ 특히, 연고자가 없는 시신 처리에 따른 비용은 복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연고자가 있음에도 시신인수는 거부한 채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시장등이 시신 처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성 측면 등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유사 입법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는 급여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지급된 급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음.

< 유사 입법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비용
3.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5조의3, 제15조의10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실시 비용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제46조(비용의 징수) ①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각각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양의무자 또는 부정수급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다만, 징수의 대상인 시신 처리비용에서 제외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개정안(제12조의3제1항의 괄호 부분)에서는 ‘유류금품 처분을 통한 충당금액’ 외에도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도 제외하고 있는 바, 현재 공영장례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는 시장등이라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아울러, 공영장례 지원사업은 시신이송, 화장 등 장례절차에 따른 비용 전반을 지원²⁾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 시신 처리비용에서 제외할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된 최소한의 금액만 시신 처리비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 받은 금액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³⁾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복지서비스 제공이 목적이므로 이에 대한 비용 청구는 상속재산에 대한 민법과의 관계 고려 및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빈소,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대여품 및 용품
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비용
3. 장례업체·민간기관·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4. 화장장 운구비용 및 화장비용
5. 유품 정리 비용 등

3) “등”의 의미에는 아예 시신 처리비용 제외에서 삭제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

< 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단체 의견 >

보건 복지부	◦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시장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사망자의 장례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취지에 공감 ◦ 다만, 현재 공영장례 지원사업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에서 진행중이므로 개정안 제12조의3제1항의 ‘제12조제6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시장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장례비용 청구는 금전급부의무라고 볼 근거가 확실치 않으므로, 행정상 강제징수라고 볼 수 없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가 아닌 민법상 손실 보상으로 처리함이 타당 ◦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는 지자체의 장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에 대한 비용 청구를 지자체 권한으로 부여하도록 입법화 하는 것은 민법과의 관계 고려와 더불어 타당성 등을 신중 검토할 필요
서울시	◦ 현행 장사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류금품 처분을 통해 장례 비용 일부 충당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비용 청구하는 것은 행정의 중복성 및 과잉 규제 가능성 있음
부산시	◦ 복지서비스 제공이 아닌 상속재산 받은 자에 대한 장례 비용 징수 업무로 인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우려 및 업무 담당자 부담 가중 될 우려 있음 - 연제구 조례는 부정 수급 및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환수를 규정한 반면, 개정안은 상속재산 취득한 자에게 비용 사후 청구에 관한 내용으로 법적 성격에 차이가 있음
경기도	◦ 상속받은 자에게 장례비용을 청구할 경우 청구 대상을 특정해야 하는바, 상속 범위가 4촌 이내에 방계혈족까지 포함되므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비용 청구 과정에 상당한 행정적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우려 있음

문 의 처

02)6788-5499

【참고1】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 면제 현황 (2024.12.31. 기준, 보건복지부)
-------	---

(단위 : 원)

구 분		관내			관외		
시도	시설명	일반	국가유공자		일반	국가유공자	
			시신	유골		시신	유골
서울	서울시립승화원	12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서울추모공원	12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부산	부산영락공원	120,000	면제	면제	480,000	면제	면제
대구	대구명복공원	18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인천	인천가족공원	16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광주	광주영락공원	90,000	면제	면제	900,000	면제	면제
대전	대전시정수원	90,000	면제	면제	570,000	면제	면제
울산	울산하늘공원	140,000	면제	면제	800,000	면제	면제
세종	세종은하수공원	16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경기	수원시연화장	15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	5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용인평온의숲	100,000	면제	면제	900,000	면제	면제
	화성함백산추모공원	16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강원	춘천시립화장장	70,000	면제	40,000	700,000	면제	400,000
	원주시립화장장	100,000	면제	면제	900,000	면제	면제
	강릉솔향하늘길	150,000	면제	면제	700,000	면제	면제
	동해시공설화장장	100,000	면제	면제	600,000	면제	면제
	태백시화장장	100,000	면제	면제	700,000	면제	면제
	속초시화장장	100,000	면제	면제	700,000	면제	면제
	정선군하늘화장터	100,000	면제	면제	700,000	면제	면제
	인제종합장묘센타	70,000	면제	40,000	700,000	면제	200,000
충북	청주시목련공원	10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충주시공설화장장	10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제천시영원한쉼터	5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충남	천안추모공원	100,000	면제	면제	800,000	면제	면제
	공주나래원	10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홍성군추모공원	50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전북	전주시승화원	14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군산시승화원	6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남원시승화원	60,000	면제	면제	600,000	면제	면제
	서남권추모공원	7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익산시공설화장장정수원	6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구 분		관내			관외		
시도	시설명	일반	국가유공자		일반	국가유공자	
			시신	유골		시신	유골
전남	목포시화장장	90,000	면제	면제	550,000	면제	면제
	여수시영락공원승화원	60,000	면제	면제	600,000	면제	면제
	순천시립화장장연화원	58,000	면제	면제	700,000	면제	면제
	광양시립영세공원화장장	100,000	면제	면제	530,000	면제	면제
	남도광역추모공원	7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경북	포항시립우현화장장	50,000	면제	면제	400,000	면제	면제
	포항시구룡포화장장	40,000	면제	면제	320,000	면제	면제
	경주시립화장장	150,000	면제	면제	1,000,000	면제	면제
	김천시공설화장장	150,000	면제	면제	800,000	면제	면제
	안동시장사문화공원	150,000	면제	면제	900,000	면제	면제
	구미시추모공원	100,000	면제	면제	600,000	면제	면제
	영주시화장장	50,000	면제	면제	400,000	면제	면제
	상주시승천원	10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문경시화장장	50,000	면제	면제	600,000	면제	면제
	의성군공설화장장	100,000	면제	면제	900,000	면제	면제
	울진군립추모원	100,000	면제	면제	400,000	면제	면제
	울릉군추모공원	30,000	면제	면제	60,000	면제	면제
경남	창원시립마산화장장	7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창원시립상복공원화장장	7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진주시안락공원	70,000	면제	면제	352,000	면제	면제
	통영시추모공원	100,000	면제	면제	800,000	면제	면제
	사천시공설화장장	7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밀양시공설화장장	80,000	면제	면제	520,000	면제	면제
	고성군공설화장장	50,000	면제	면제	400,000	면제	면제
	김해추모의공원	10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남해추모누리영화원	6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함안하늘공원	80,000	면제	면제	500,000	면제	면제
제주	제주도 양지공원	50,000	면제	면제	120,000	면제	면제